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 홈페이지 게재

■ **주택경매예정통지 명세** (기준일: 2024-12-05)

<table>
<tr><th>NO</th><th>대상자번호</th><th>이름</th><th>생년</th><th>성별</th><th colspan="3">주택 경매
예정 주소</th><th>기한이익
상실 유무</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12797817</td><td rowspan="3">조*화</td><td>1984</td><td>남</td><td colspan="3">인천 서구 신석로 122번길 24, B동***호 (석남동, 인성아파트)</td><td>채권양도 전 기한이익 상실</td></tr>
<tr><td colspan="2">주택경매신청
예정일</td><td>채무
조정 기한</td><td>최초대출기관
(또는 양도 기관)</td><td>수임사</td><td>수임사 담당자</td></tr>
<tr><td colspan="2">2024-12-26</td><td>2024-12-20</td><td>BNK캐피탈 (양도 채권)</td><td>SM신용정보</td><td>박정윤 실장
(☎ 02-2138-5364)</td></tr>
</table>

▣ 귀하께서 채무조정 관련 신청을 하셨다면 당사로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연체료는 기준일 이후 상환 시까지 가산되며 정확한 채무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홈페이지 게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채무조정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 1항에 따라 법조치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

귀하께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아 경매 신청 예정일까지 아래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귀하 소유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의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경매신청 예정임을 통지 하오니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당사와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통하여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 업무를 위임 받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

·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1661-43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	②심사 및 결과통지	▷	③동의	▷	④채무조정서 작성	▷	⑤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